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48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보강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편사항 (구 본청) (제3조 ~ 제9조)

- 1) 국 신설(2국) : 기획재정국, 안전건설교통국
- 2) 국 폐지(2국) : 시민친화국, 경제친화국
- 3) 국 명칭변경(3국)
 - 행정지원국 → 행정관리국, 생활복지친화국 → 복지환경국, 생활도시친화국 → 도시관리국
- 4) 부서 신설(5과) :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생활보장과, 도시디자인과
- 5) 부서 폐지(1과) : 사회적경제과

개편사항 (보건소) (제10조 ~ 제12조)

- 1) 부서 신설(2과) : 지역보건과, 보건지소과
- 2) 부서 폐지(2과) :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 기타 부서의 국 이동 및 명칭변경 사항 등 :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

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별 분장사무와 동 주민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 조사, 민원관리, 청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③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공보 및 구정홍보, 언론 관련업무, 홍보물 관리, 홈페이지 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동영상 제작 등으로 한다.

제5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총무, 인사, 조직, 후생복지, 직원교육,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동행정 총괄, 선거, 주민등록, 자원봉사, 사회단체 운영 지원
4. 자치센터,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미래인재육성, 혁신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 총괄
6.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정책 수립 및 조정·총괄
12. 새울행정포털시스템, 인터넷 관리, 정보통신, CCTV에 관한 사항
13. 문서, 관인, 보조문서, 기록관 운영, 통계에 관한 사항
14.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재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구정의 기획, 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배정, 교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방의회, 법제, 소송에 관한 사항
6. 봉제·인쇄·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
7.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8.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
9.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물품관리, 계약,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13. 구 세입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및 국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5.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환경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주민복지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관리·연계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복지,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 총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관리

8. 저출산 대책, 다문화지원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10. 사회안전망 및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업무 총괄

1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숙인 보호, 자활근로, 자활주거에 관한 사항

14. 청소행정, 일반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청소대행업체 관리,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쓰레기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8. 연료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는 도심정비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관리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택행정,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개선 정책·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정책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위법건축물 관리 및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9. 영선,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녹지조성,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녹지대,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2. 지적행정, 토지관리,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 생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도로·지하도·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가로정비 및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 총괄, 관내 시설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5.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교통시설, 운수지도,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등록, 중기등록에 관한 사항
8. 주차시설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주차관리,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0.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 및 보도시설물,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 시설 집행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보건소) 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및 보건지소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정한 소관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